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5897 이혼 및 위자료 등
원 고	갑 (1963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을 (1959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7. 9. 6.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와 피고는 1990. 12. 19.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1남 1녀를 자녀로 두었다.
- (2)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는데, 무선전화기나 쪽가위, 모과 등을 원고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원고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저 화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 (3)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07.경 피고가 진해시로 일하러 가면서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고, 자녀들은 원고가 양육하였다.
- (4) 피고는 2017. 4. 30.경 원고가 다른 남자와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을 보고 원고

의 위도를 의심하였고, 이를 기화로 원고를 협박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다. 원고가 2017. 5. 8.경 피고의 요구로 만난 자리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피고와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어 상담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피고가 쫓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송곳으로 눈을 찌르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5)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는 2017. 5. 10. 이 법원 2017처16호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원고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원고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원고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재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6.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경부터 피고와 따로 생활하면서 피고로부터 전혀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7.경부터 피고의 직장 문제로 따로 생활하였음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지를 왕래하면서 지낸 사실, 피고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